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존협약

1992년 2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서명
1993년 2월 16일 발효

이 협약의 당사자는

북태평양의 소하성자원이 주로 캐나다·일본·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의 수역에서 기원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원들이 북태평양의 일정 수역에 혼재함을
인식하며,

소하성자원이 기원하는 수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그러한
자원에 대한 일차적 이익과 책임을 가짐을 인식하고,

소하성자원에 대한 어업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어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만 행하여짐을
인식하며,

소하성자원의 모천국이 이러한 자원의 보존·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경비를 지출함과 동시에
경제개발의 기회를 포기함을 인식하고,

북태평양의 소하성자원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태평양의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과학적 정보의 획득·분석 및 보급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고,

북태평양의 소하성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기를 희망하며,

북태평양의 소하성자원의 보존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효과적인 체제를 설립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약수역”이라 한다)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북위 33°이북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수역이다.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목적을 위한 활동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어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 수역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수역에서 남쪽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양해된다.

제 2 조

이 협약의 목적상,

1. “소하성어족”이라 함은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어족으로서 부속서 가에 규정된 소하성어종을 말하되, “소하성자원”이라 함은 그러한 어족의 자원을 말한다.
2. “어족”이라 함은 해양포유류와 바다새를 제외한 어류·연체류·갑각류 및 모든 형태의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3. “조업”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어류를 어획·포획 또는 수확하거나 어획·포획 또는 수확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
 - 나.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해상활동
4. “목표조업”이라 함은 특별한 어종 또는 어족자원을 목표로 하는 조업을 말한다.
5. “부수적포획”이라 함은 어떤 어종 또는 어족자원에 대하여 목표조업을 행하는 동안 다른 어종 또는 어족자원을 어획·포획 또는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6. “생태학적 관련 종”이라 함은 협약수역에서 발견되는 소하성자원과 관련되는 해양생물종을 말하되, 소하성자원의 포식자나 피식자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7. “원당사자”라 함은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가로서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제 3 조

1. 협약수역안에서는
 - 가. 소하성어족에 대한 목표조업은 금지된다.
 - 나. 소하성어족에 대한 부수적 포획은 부속서 나에 따라 실행가능한 최대범위까지 최소화되어야 한다.
 - 다. 비소하성어족을 목표로 하는 조업활동의 경우 부수적 포획으로 획득된 소하성어족을 조업선안에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며, 그러한 소하성어족은 바다에 즉시 돌려보내져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7조에 따라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포획된 소하성어족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그러한 불법거래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 4 조

1.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에 의한 조업활동이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자원의 보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당해 국가나 실체에 주위를 환기시키는데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에 의한 조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국가나 실체가 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는 법령을 채택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력하도록 할 것을 장려하는데 합의한다.
3.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하에서 등록된 선박들이 이 협약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4.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가 그 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에 의한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족에 대한 목표조업을 방지하고, 그 부수적 포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각자의 국내법에 부합되는 조치를 행하는데 협력한다.

제 5 조

1. 당사자는 자국민과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들이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2. 당사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협약수역안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 가. 각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하성어족에 대한 목표조업이나 부수적 포획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다른 당사자의 선박에 승선하여 장비·조업일지·서류·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을 검사하고 승선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그러한 검사와 심문은 그 선박들이 최소한의 간섭과 불편을 받도록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공무원은 선박의 선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각자의 정부가 발행한 증표를 제시한다.
 - 나. 어떤 사람이나 선박이 실제로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업에 종사하거나 가목의 공무원이 그 선박에 승선하기 이전에 분명히 조업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을 체포·억류할 수 있고 그 주변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그 공무원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에게 그 체포·억류의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공무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이들을 인도한다. 그러나, 그러한 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즉각적으로 그 인도를 수락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보를 행한 당사자는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인도를 수락할 때까지 협약수역안 또는 이 협약의 다른

당사자와 교신하여 통보한 편리한 항구에서(동 당사자가 그러한 교신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계속 체포·억류할 수 있다.

-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인도를 수락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의 권한있는 공무원은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에 요구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심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행한다. 또한, 그 권한있는 공무원은 관련 어기의 잔여기간동안 당해 사람이나 선박이 더 이상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행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집행공무원의 당해 선박으로의 승선배치, 당해 선박이 허가받은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당해 선박의 협약수역으로부터의 배제가 포함될 수 있다.
 - 라. 위에 규정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하여 있는 당사자의 당국만이 그 위반행위를 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인과 증거는, 그들이 이 협약의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는 한, 동 위반행위의 심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되어야 하며, 동 당사자의 행정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적절히 이용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재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자국의 선박이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승선 및 조사를 허용·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며, 향후 행하여질 수 있는 집행조치에도 협력한다.

제 6 조

1.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포획된 소하성어족과 관련한 집행조치와 그 사건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국민·거주민 및 선박에 의한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족에 대한 목표조업 및 부수적 포획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한다.

제 7 조

1. 당사자는 영해의 폭이 측정되어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수역에서 소하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과학적 연구(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데 협력한다.
2. 협약수역안에서의 조업이나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생물통계학적 정보, 어획량·어업노력 통계 및 생물학적 표본을 포함한 어업자료와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수집·보고·교환하는데 협력한다.
3.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어획정보 및 이행정보와 생물학적 표본이나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자원이 있는 협약수역에 인접한 수역의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그 밖의 기술적 자료나 정보와 같은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4. 당사자는 소하성자원(적절한 경우에는 생태학적 관련 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협약수역안에서의 어획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계획(과학참관계획을 포함한다)을 개발한다.
5. 당사자는 세미나·워크숍과 같은 과학교류와 적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자의 교류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당사자는 자국민이나 선박에 의하여 수행되는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어족에 대한 목표조업이나 상당한 수준의 부수적 포획과 관련되는 과학적 연구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되, 모든 당사자가 적절한 과학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수행에 충분히 앞서 이를 제출한다. 요청당사자를 제외한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그 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획과 관련된 조업이 제3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동 계획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한다.
7. 당사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성어족에 대한 포획이 과학적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협약수역안의 모든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소하성어족의 어획은 9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8 조

1. 이에 따라, 국제기구인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의 목적은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3. 위원회는 협약수역안의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나 당사자의 영토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영토안에서 위원회와 그 직원이 향유하는 면제와 특권은 위원회와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6. 위원회의 본부는 캐나다의 밴쿠버에 위치하거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다.
7. 위원회의 공식언어는 영어·일본어 및 러시아어이다. 각 당사자는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3인 이하의 대표를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 동 대표들은 위원회의 회의시 전문가 및 자문위원을 동반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립한다.
9. 위원회는 사무국장 및 적절한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립한다.
10. 각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가. 모든 중요한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자원의 모친국인 모든 당사자의 총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나.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하는 모든 당사자의 투표수의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다.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자원의 모친국인 어느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11.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각각 재선이 가능하나, 4년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 동일한 당사자의 대표가 의장과 부의장이 될 수 없다.
12.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본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지역에서 정기연례회의를 개최한다.
13. 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회합하며, 그 시기 및 장소는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14. 정기연례회의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어느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의장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 두 당사자중 적어도 하나는 원당사자이어야 한다.
15.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16. 위원회는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제 9 조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당사자에 권고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활동, 특히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소하성어족의 어획 및 불법거래나 당사자(적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그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교환을 증진한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활동에 상응하는 제재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4. 이 협약을 위반한 조업의 결과로서 모천국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이 협약을 위반하여 포획될 수 있는 어족의 기원지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5. 제5조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집행활동을 검토·평가하고,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질 추가적 조치를 권고한다.
6.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과학자료(소하성자원이 기원하는 지역을 확인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수집·교환·분석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활동과 관련된 어획 및 어획노력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하고, 그러한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력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7. 소하성어족의 제품이 합법적으로 수확된 어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 계획의 구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8. 소하성자원(적절한 경우에는 생태학적 관련 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협약수역안의 과학적 연구활동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9.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과학적 권고를 포함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10. 적절한 경우에는,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약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실체를 초청한다.

11. 이 협약과 그 부속서의 개정안을 권고한다.
12. 협약수역안의 소하성자원에 대한 부수적 포획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13.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제 10 조

1.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
2. 사무국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행한다.
 - 가. 위원회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 나. 이 협약과 관련되는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의 수집·배포
 - 다.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한 기능이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능의 수행
3.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채용조건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채용조건에 따라 그 직원을 임명한다.

제 11 조

1. 각 당사자는 자국 대표,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위원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분담금으로 위원회에 의하여 지불된다.
2. 위원회는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사무국장은 예산이 검토될 위원회의 회의로부터 늦어도 60일 이전에 분담금 할당계획 및 예산초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3. 예산은 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분담된다.

4. 사무국장은 각 당사자에게 분담금을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4월 이내에 위원회 본부가 위치한 국가의 통화로 동 분담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5. 2년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제8조제10항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는데 참가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6. 위원회의 재정문제는 위원회가 선정한 외부의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받는다.

제 12 조

1. 모든 당사자는 언제나 부속서를 제외한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제1항에 규정된 개정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기탁처는 그러한 회의를 소집한다.
3. 개정안은 기탁처가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받은 때에 발효한다.

제 13 조

1. 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약에 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자원의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의 정부가 제9조제11항에 따라 위원회가 권고한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이 부속서의 개정안은 위원회가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자원의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로부터 개정안의 수락통지를 받은 날부터 동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 나. 모친국이 아닌 당사자가 가목에 규정된 날까지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가목에 규정된 날에 동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모친국이 아닌 당사자가 가목에 규정된 날 이후에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동 개정안은 위원회가 동 당사자로부터 개정안의 수락통보를 받은 날부터 동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위원회는 부속서의 개정안의 수락통보에 대한 접수일을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4 조

모든 당사자는 기탁처에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2월 이후에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 15 조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해양법과 관련된 문제 또는 당사자가 가입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협약하에서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의 입장이나 견해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이 협약의 원본은 기탁처인 러시아연방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다른 모든 서명당사자 및 가입당사자에게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1. 이 협약은 협약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자원의 주요 모천국인 캐나다·일본·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위 4개 국가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4번째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 이후에 발효한다.

제 18 조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다른 국가들은 원당사자의 만장일치에 의한 초청에 의하여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동 국가에 대한 이 협약의 효력은 당해 국가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2월 11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불어·일본어 및 러시아어로 각각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1992년 2월 11일 모스크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 Michael Richard Bell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 Hiroshi Shigeta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 Fedor V. Shelov-Kovediaev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 James Franklin Collins

.....

협약, 1993년 2월 16일에 발효

대한민국, 2003년 5월 27일에 협약 가입

가. 종

연어
 은연어
 홍연어
 급사연어
 왕연어
 시마연어
 스틸헤드송어

나. 부수적 포획

1. 비소하성어족에 대한 어업은 그러한 부수적 포획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소하성어족의 부수적 포획을 최소화하는 시기·수역 및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2. 2 이상의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의 국민이나 선박에 의하여 이 부속서에 위반하여 협약수역에서 어업이 행하여진다고 믿는 사실을 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통지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 당사자들은 그러한 통보의 근거로 삼은 정보를 제출할 책임을 진다. 문제의 조업을 행한 국민이나 선박이 속한 당사자는 그 어업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동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입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어업은 이 부속서에 부합되게 행하여진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된다.

의사규칙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6년 10월 23일 개정

<i>제목</i>	<i>규칙</i>	<i>페이지</i>
회원국 대표의 변동 사항	1.....	105
연락 책임자	2.....	105
회의	3.....	105
자문위원, 전문가 및 참관인	4-5.....	106
회의 절차	6.....	106
투표	7-8.....	106
소위원회	9-13.....	107
임원	14-18.....	107-108
사무국	19-22.....	109-110
의제	23-24.....	110
간행물	25.....	110
의사규칙의 개정	26.....	111

1992년 2월 11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북태평양소하성 자원보존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7항에는 협약의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3인 이하의 대표를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5항에는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약에 포함된 모든 의사 관련 조항은 이 의사규칙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회원국 대표의 변동 사항

1. 각 당사국은 교체대표의 임명을 포함하여 자국 대표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교체 대표들은 협약 당사국들이 임명한 대표의 부재 시에 위원회 회의의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당사국들이 임명한 대표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연락 책임자

2. 각 당사국은 회의 사이의 기간 동안 자국을 대신하여 연락을 담당할 주 책임자를 임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락 책임자를 임명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들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 연락 책임자의 임명과 관련된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회의

3. 위원회는 협약 제8조 12항에 따라 정기연례회의를 개최한다. 기타 위원회 회의는 당사국들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시기 및 장소는 의장이 당사국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 전문가 및 참관인

의사규칙

4.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동 당사국이 선택한 자문위원, 전문가 및 통역을 동반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동반자의 명단을 회의 시작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가 *비밀로* 열리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초청하지 않는 한 전문가나 자문위원이 참석할 수 없다.
5.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한 회의에서 옵서버로서 참가하기에 적절한 어느 정부간 또는 다른 기구를 초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그러한 회의에 손님 또는 옵서버로서 참가할 개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초청은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다. 결정은 모든 당사국의 총의로 결정된다.
- 5a. 위원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기를 바라는 어느 기구는 참가의사를 표시한 신청서를 적어도 회의를 개최 120일 전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사무국장은 그러한 신청서를 적어도 연례회의 90일 전에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당사국에 보낸다. 그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적어도 연례회의 60일 전에 모든 당사국간 총의에 의하여 취하여 진다.

회의 절차

6. 위원회에서는 의장이나 소위원회 의장이 허가하고 다른 대표들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이 발표할 수 없다.

투표

7. 협약 제8조 10항에 규정된 투표는 거수, 호명, 비밀투표 중에서 의장이나 소위원회 의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소위원회에서의 투표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각 당사국의 대표들 중 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회기 사이에는 우편이나 다른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투표는 각 당사국의 연락 책임자나 수석대표가 위원회에 송부한다.

소위원회

9. 재정행정소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 1인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장, 부국장 및 행정관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구성원이다. 이 소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과 행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문제들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그러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0. 이 집행소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 1인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장 및 부국장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구성원이다. 이 소위원회의 기능은 이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문제들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그러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 1인과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장 및 부국장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구성원이다. 이 소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위임하는 과학 연구 및 통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문제들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그러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러한 소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13. 각 당사국은 소위원회 참석자를 선정하며, 그러한 선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임원

14. 위원회의 임원은 협약 제8조 11항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서 연례회의를 폐회할 때 시작되어 그 후 두 번째 연례회의가 폐회될 때 종료되며, 당사국들 사이의 윤번제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15. 위원회는 의사규칙 제9, 10, 11조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의 의장을 선임하되, 당사국들 사이에 윤번제의 원칙을 충분히

- 고려한다. 선임된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16.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직위가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공석이 되는 경우, 그러한 공석은 남은 임기 동안 전임자가 소속되었던 당사국이 선임한 대표로 총원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17. 위원회 의장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a) 의사규칙 제3조에 따라 연례회의와 기타 회의를 소집
 - (b)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
 - (c)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의사 진행상의 모든 문제를 판정, 단 모든 당사국은 의장의 판정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 (d) 투표를 요청하고 위원회에 투표 결과를 발표
 - (e) 의사규칙 제23조가 요구하는 의제 초안을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결정
 - (f)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조사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서명하고, 그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 대표 및 기타 관련자에게 송부
 - (g) 위원회를 대표하여 협약 당사국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에 서명
 - (h)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국들로부터 문서를 접수하여 다른 당사국들에게 전송
 - (i) 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결정을 하고 사무국장에게 이행을 지시(특히 위원회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 (j)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요청된 다른 조치를 수행
 18. 의장의 직위가 공석이 되거나,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 절차 제16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거나, 의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9. 사무국장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a) 위원회가 제정한 지침과 예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직책에 직원을 임명
 - (b) 위원회가 부여한 사무국의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
 - (c) 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수행
 - (d)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모든 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재정규칙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을 수령 및 분배
 - (e)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규칙에 규정된 모든 직무를 수행
 - (f)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의사규칙 제17 (f)가 요구하는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
 - (g) 모든 위원회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당사국들에게 사본을 신속하게 송부
 - (h) 소위원회와 의사규칙 제12조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위원회의 회의록 서기 역할을 수행
 - (i)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실에 대한 문의를 포함하는 일상적이고 잡다한 사항, 위원회가 이전에 결정한 정책에 대한 문의, 그리고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향후 프로그램들에 대한 응신 업무를 수행
 - (j) 위원회의 공식 파일과 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
 - (k) 협약 제7조 2항과 3항에 따라, 협약 수역과 인접 수역(관련담수계 포함)에서 어획된 모든 소하성어족에 관한 어획정보와 협약 수역과 인접 수역에 대해 위원회가 지정한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어획정보,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통계 연감의 작성과 발행을 감독
 - (l)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간행물의 작성과 발행을 감독
 - (m)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임원의 직무 수행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의장이 위임한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
 - (n) 위원회나 의장이 지시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
 - (o)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국장과 행정관에게 권한을 위임
20. 부국장은 사무국장이 의사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직무와 책임을

-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21. 사무국장의 직위가 공석이 되거나 사무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거나 사무국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부국장이 사무국장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2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원 규칙을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의제

23. 위원회 회의의 의제 초안은 사무국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당사국들의 검토, 의견 제시 및 수정을 위해 늦어도 회의 90일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의제 초안에 대한 의견과 수정 사항을 반영한 후에, 사무국장은 잠정 의제를 작성하여 회의 90일 이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정 의제는 필요한 경우 채택 시 의사규칙 제24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
24.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에 대한 개정 또는 협약 제9조 11 항에 의한 결정 및 권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 또는 권고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항을 협의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검토를 만장일치로 수락할 회의가 열리기 60일 이전에 배포된 잠정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간행물

25. 위원회는 의사규칙 제17(f)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을 위해 작성한 연례보고서와 의사규칙 제19(k)조에 의한 통계 연감을 발행하고, 이외에도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보고서를 수시로 발행한다.

의사규칙의 개정

26. 본 의사규칙은 협약의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의사규칙

재정규칙

재정규칙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5
회계연도	2.....	115
예산	3-9.....	115-116
분담금	10-11.....	116
지출금의 사용	12-13.....	116
전용	14.....	117
회계 정책 및 기금	15-22.....	117-118
급여	23.....	119
이사비	24.....	119
출장비	25.....	119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무	26-30.....	119-120
회계감사	31-34.....	120-121
보증	35.....	121
일반규정	36-39.....	121

재정규칙

1992년 2월 11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재정규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정규칙

적용

1. 이 규칙은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의 재정행정에 적용된다.

회계연도

2.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기간으로 하며,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

예산

3. 사무국장은 차기 회계연도의 추정 예산과 차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측 예산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정기 연례 회의에 제출한다. 추정 예산은 늦어도 연례 회의를 열기 60일 이전에 모든 대표에게 송부해야 한다.
4. 연간 추정 및 예측 예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포함된다. 이러한 예산들은 사무국이 소재한 국가의 통화로 표시한다.
5. 연간 추정 및 예측 예산은 조직 및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위원회가 수시로 지정하고 사무국장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6. 정기연례회의에서, 추정 및 예측 예산은 재무행 정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권고를 받는다.

7. 정기연례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무행정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에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을 채택한다.
8. 위원회는 차차기 회계연도의 예측 예산을 검토하나 차기 연례회의 시까지 채택하지는 않는다.
9. 추정 예산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추가 추정 예산을 연례 추정 및 예측 예산과 같은 양식으로 각 당사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채택할 수 있다.

분담금

10. 연간 예산 분담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2회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동 회계연도 하반기의 시작일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1.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정기연례회의에 분담금 수령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지출금의 사용

12. 지출금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다.
13. 지출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공급 받은 물품 및 제공 받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고 동 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지불 법적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회계연도 말 이후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잔액은 운영자본기금으로 이체된다.

전용

14. \$15,000를 초과하는 금액의 예산은 의장의 사전 허가 없이 부문 사이에 전용할 수 없다.

회계 정책 및 기금

재정규칙

15. 회계 정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연간 재무제표와 추정 및 예측 예산은 이 재정규칙에 따라 자산, 부채, 수입, 지출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휴가 수당은 지불한 회계기간 내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위원회가 취득 또는 임대한 자본 자산은 취득연도에 지불한 것으로 기장하고 계정에서 자본화하거나 상각하지 않는다.
 - (b) 위원회 지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위해 일반기금을 설치하고, 수입원은 현행 회계연도 동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지불한 분담금, 동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은행 이자 및 기타 잡수입, 그리고 재정규칙 제18조에 따라 운영자본기금으로부터 이체한 금액으로 사용한다.
16. 위원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지출금의 처리를 위해 운영자본기금을 설치하고 재정규칙 제13조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일반기금에서 이체되는 금액과 캐나다 소득세 대신에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수입원으로 사용한다. 위원회가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는 위원회의 전직원에 대해서는 캐나다 소득세(연방세와 주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로부터 발생한 금액은 운영자본기금 내에 둔다. 운영자본기금은 우발 위험 준비금, 퇴직금, 이사비용과 같은 특별준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 사무국장은 분담금을 수령할 때까지 예산상의 지출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운영자본기금에서 우선 지급할 권한을 갖는다. 우선 지급한 금액은 해당 목적에

- 대한 분담금을 수령하는 즉시 상환한다.
18.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자본기금의 금액을 수시로 일반기금으로 이체하여 다른 회계연도의 지출금을 상계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비용과 임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19. 위원회는 운영자본기금 총액에서 증가한 금액을 협약 당사국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불을 할 수 있다. 환불 금액은 차기에 지불할 연간 예산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20.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공동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의 관련 기관 및 기타 기부자가 제공한 자발적 분담금을 수입원으로 사용하되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과학연구특별기금을 운용한다.
 - (a) 사무국장은 분담금의 제공 목적이 위원회의 정책, 목표, 활동과 부합되는 경우 협약 당사국의 예산 분담금에 추가하여 제공하는 자발적 분담금을 수락할 수 있다.
 - (b) 비협약 당사국이 제공하는 자발적 분담금은 그러한 분담금의 목적이 위원회의 정책, 목표, 활동과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 협약 당사국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각 연례회의에서 분담금의 수령 및 지출을 포함한 과학연구특별기금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21. 특정적인 일시적 프로젝트 및 제삼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 특별목적기금을 설치한다. 이 기금은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 재정규칙 제15-20조에 기술된 다른 기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수입과 지출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22.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기금을 적절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급여

23. 위원회는 직원 규칙에 따라 상근 직원의 급여를 매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정한다.

이사비용

재정규칙

24. 상근 직원의 이사비용은 재정행정소위원회가 제정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지불한다.

출장비용

25. 사무국 직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출장비는 재무행정소위원회가 제정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지불한다.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무

26.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채택한 위원회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까지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지불할 권한을 갖는다.
27. 사무국장은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a) 효과적인 재무 관리와 비용 절약노력을 한다.
 - (b) 서비스나 물품을 수령했고 그 대금을 전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표 및 다른 서류들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 (c) 위원회를 대신하여 분담금을 수령하고, 채무를 발생시키고 대금을 지불할 사무국의 상근 직원을 임명한다.
 - (d) 위원회의 모든 기금 및 기타 재무 자원의 수령, 보관 및 지출의 규칙성, 위원회가 채택한 지출 및 기타 재무 조항과 일치하는 채무와 지불, 그리고 위원회 자원의 경제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무 거래에 대한 일상적인 심사 및 검토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재무 관리 절차를 확립한다.

28. 사무국장의 권한으로 할당을 하거나 다른 적절한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9. 사무국장은 현금, 저장품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손실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각할 수 있으나, 상각한 모든 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회계기록과 함께 매년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사무국장은 필요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신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 (a) 위원회의 자산 및 부채
 - (b) 수입 및 지출
 - (c) 다음을 포함하는 지출금 현황
 - (i) 원래 예산상의 지출금
 - (ii) 전용에 의해 변경된 지출금
 - (d) 수령 및 지불
 또한,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적절히 나타내는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감사

31.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와 회계기록은 사무국이 소재한 국가의 통화로 표시한다.
32.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와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협약 제11조 6항에 규정된 회계감사를 받는다.
33. 회계감사인은 연례보고서와 회계기록을 인증하는 것 이외에 재무 절차, 회계 시스템, 내부 재정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 관습의 재무적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4. 회계감사인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행정소위원회가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증

재정규칙

35.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직원들은 위원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금액에 대해 평판이 좋은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 비용은 위원회가 지불한다

일반 규정

36.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이 재정규칙에 기술된 직무를 다른 사무국 직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37. 이 재정규칙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발효되고 위원회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38. 전술한 규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의장과 상의한 후에 그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39. 그러한 수정이 협약의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이 재정규칙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집행소위원회 위임 사항

<i>제목</i>	<i>페이지</i>
집행소위원회 위임 사항	125-126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 잠정 위임 사항	127-128
재무행정소위원회 위임 사항	129
NPAFC 과학연구특별기금의 사용에 대한 위임 사항	131-132
외부 재단 과학 연구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위임 사항.....	133-134
위원회의 운영자본기금에서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공동 프로젝트의 기준	135

위임

집행소위원회 위임 사항

위원회가 채택한 당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항은 협약 제3, 4, 5, 6, 9조에 기술되어 있다. 다른 사항도 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다.

당 소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1) 집행 조치, 전략, 계획
- (2) 협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포획한 소하성어족의 거래 및 불법거래
- (3) 협약의 준수사항을 피하기 위한 조업선의 시도와 그러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국이 취한 조치
- (4)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조업선이 협약수역에서 수행한 무단 어획 활동
- (5) 협약의 조항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기국의 조치
- (6) 협약수역에서의 어획에 대한 국내 조치(제재 포함)
- (7) 적절한 기타 사항

집행위임

또한, 집행 업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가 협약수역에서의 과학 연구를 위한 “항해 일정”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일정을 수령
- (2)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집행 연락 담당자 사이의 연락을 통해서 협약수역에서 작업 중인 조사선의 현재 시간과 해당 위치를 협약 당사국에게 제공
- (3) 원산지 증명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
- (4)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부 위원회를 설치
- (5) 협약에 반하는 활동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의 구축을 위해 당사국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에 관해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
- (6) 이 협약을 위반한 조업의 결과로서 모천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고려

- (7)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 성실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추가로 취할 조치에 관해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
- (8)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과 관련된 집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나 실체를 초청하는 것에 관해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
- (9) 협약수역에서 소하성어족의 부수적인 포획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에 관해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
- (10) 적절한 기타 의무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 잠정 위임 사항

1993년 2월에 개최된 위원회 설립 총회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해당 위원회에 대한 잠정 위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항은 협약 제7, 8, 9조에 준한다. 기타 사항도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위원회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제1부)(1) 과학적 자료의 수집 및 교환과 소하성어종의 표본 수집을 검토 및 조정
- (2) 협약수역 및 인접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자원이 기원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조정 및 평가
 - (3) 위원회가 지정한 관심 대상 종과 관련된 포획에 있어서 부수 어획의 영향을 포함하는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과학적 정보 및 견해의 제공을 보장
 - (4) 소하성자원(적절한 경우에는 생태학적 관련 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협약수역에서 어획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적절한 오피서버프로그램을 개발
 - (5) 과학 교류, 세미나, 워크숍, 현장 연구, 자료 분석을 조정
 - (6) 협약수역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소하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대상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위원회에 권고
 - (7) 협약수역 안의 소하성어족에 대한 부수적 포획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위원회에 권고
 - (8) 협약 제7조 6항에 따라 제안된 과학적 연구계획을 검토
 - (9) 위원회가 관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생태 관련 종을 확인

연구통계위임

- (10)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부 위원회를 설치
- (11) 발행하기 위해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발행할 다른 보고서에 관한 권고사항 작성
- (12) 위원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 작성

(제2부) 또한,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적 자문을 포함하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얻기 위해 PICES 및 다른 관련 국제 기구와 협력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
- (2) 소하성 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에 관한 과학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 또는 실체를 초청하도록 위원회에 권고
- (3)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문제들을 검토.

재무행정소위원회 위임 사항

당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항은 제8, 10, 11조, 재정규칙, 의사규칙에 기술되어 있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관련 사항들을 포함한다.

재정행정

NPAFC 과학연구특별기금의 사용에 대한 위임 사항

1. NPAFC 과학연구특별기금(특별기금)은 협약 당사국 또는 NPAFC 재정규칙 제20조에 규정된 비협약 당사국이 제공하는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이 기금에는 NPAFC와 기금 제공 기관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나 양해각서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 및 연구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특별기금의 사용은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CSRS)가 추천하고 재정행정소위원회(F&A)가 검토하고 위원회가 승인한다.
3. 특별기금은 NPAFC 과학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및 기타 협력적 활동에 사용하며, 여기에는 현장 및 실험실 연구 지원, 연구 장비 및 소모품의 구매, 협력적 현장 연구에 참가하기 위한 출장, 과학 연구서의 발행, 회의와 워크숍의 조직과 공동후원, 과학 회의에 대한 출장 지원, 기타 승인된 활동 등이 포함된다.
4. 특별기금 사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특별기금 사용 제안서는 표준 요구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NPAFC 사무국을 통해 CSRS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청서 양식은 NPAFC 사무국에서 입수할 수 있다).
 - (b) CSRS 의장은 제안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제안서가 CSRS의 추천을 받는 경우, 사무국장은 상기 제2조에 따라 이러한 추천을 관련 위원회에 제출한다.
5. 기금과 회계지출
 - (a) 사무국은 가능한 경우 제안서에 명시된 공급회사나 사람에게 직접 지불한다.
 - (b) 사무국은 해당 기금수령인(들)으로부터 요청서를 접수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착수금을 지불한다. 요청서에는 기금 사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수령 인의 기관장과 NPAFC 사무국장 사이에 서면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 서나 양해각 서에는 지출이 승인된 기금의 항목 별 비용과 동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할 장비(들)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기금위임

해당 기금수령인(들)은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품목별 비용 및 지출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용하지 않은 여분의 기금은 사업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무국에 반환한다. 승인된 예산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위원회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무국이 지출하거나 상환할 수 없다.

연구기금위임

외부 재단 과학 연구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위임 사항

1. 이 위임 사항은 NPAFC 과학연구특별기금(특별기금) 이외에 NPAFC와 기금 제공 기관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나 양해각서에 의해 NPAFC가 수령하는 과학연구 보조금이나 기금에 적용된다. 외부 기금의 목적은 위원회의 정책, 목표, 활동과 합치되어야 한다.
2. 사무국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외부 재단에 과학 연구를 위한 보조금이나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CSRS)가 작성 및 추천하고 위원회가 승인한다. 외부 기금의 적시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례회의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신청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우편 투표로 결정한다.
3. 보조금이나 기금은 NPAFC와 기금 제공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나 양해각서에 따라 사용한다. 사무국은 기금 제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이나 양해각서의 사본을 당사국들의 요청시 송부할 수 있다. 서면 계약이나 양해각서는 해당 기금수령인의 기관장과 NPAFC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계약서나 양해각서에는 지출이 승인된 기금의 항목별 비용과 동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할 장비(들)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금 제공처가 보조금을 승인하면 사무국은 적시에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제공처로부터 수령한 기금은 재정규칙 제21조에 따라 특별목적기금계좌에 입금한다. 기금 제공처가 착수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자는 사무국에 원래 기금 제공처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착수금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장이 필요한 협의를 거쳐 그러한 착수금의 지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한 기금은 NPAFC 과학연구특별기금에서 임시로 제공된다. 특별기금에서 제공한 임시 지출금은 기금 제공처에서 기금을 수령하는 즉시 상환한다.
5. 사무국장은 연례회의에서 특별목적기금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외부보조위임

위원회의 운영자본기금에서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공동 프로젝트의 기준

1. 프로젝트는 위원회가 위임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해야 한다.
2. 프로젝트의 혜택은 모든 협약 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프로젝트에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협약 당사국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대 혜택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4. 프로젝트는 각 협약 당사국의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그러한 예산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규 프로젝트는 각 협약 당사국이 이미 승인하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없다.
5. 프로젝트는 태평양연어의 생태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거나 또는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나 보호를 증진 시켜야 한다.
6. 프로젝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받지 않는다.
7. 프로젝트는 위원회의 채무가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8. 프로젝트는 자금 제공을 승인 받기 전에 모든 협약 당사국의 총의를 얻어야 한다.

